

##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회원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본회의 회원은 KAIST 학사과정에 재적 중인 사람으로 한다.</li> <li>2. 본회의 정회원은 해당 학기에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한 사람으로 한다.</li> <li>3. 본회의 준회원은 해당 학기에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하지 <u>않은</u> 사람으로 한다.</li> <li>4.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,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.</li> </ol>	<p>제3조(회원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본회의 회원은 KAIST 학사과정에 재적 중인 사람으로 한다.</li> <li>2. 본회의 정회원은 해당 학기에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한 사람으로 한다.</li> <li>3. 본회의 준회원은 해당 학기에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하지 <u>아니한</u> 사람으로 한다.</li> <li>4.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,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인준받을 수 있다.</li> </ol>
<p>제7조(구성)</p> <p>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, 집행기구, 자치기구, 전문기구, 특별기구(이하 <u>산하기구</u>)로 구성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의결기구: 학생총회, 학생총투표, 전체학생대표자회의, 중앙운영위원회</li> <li>2. 집행기구: 총학생회장단, 중앙집행위원회, 상설위원회</li> <li>3. 자치기구: 학부·학과학생회, 새내기 학생회, 동아리연합회</li> <li>4. 전문기구: 감사원, 문화자치위원회, 소통국제화위원회, 학생·소수자인권위원회</li> <li>5. 특별기구</li> </ol>	<p>제7조(구성)</p> <p>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, 집행기구, 자치기구, 전문기구, 특별기구(이하 <u>"산하기구"라 한다</u>)로 구성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의결기구: 학생총회, 학생총투표, 전체학생대표자회의, 중앙운영위원회</li> <li>2. 집행기구: 총학생회장단, 중앙집행위원회, 상설위원회</li> <li>3. 자치기구: 학부·학과학생회, 새내기 학생회, 동아리연합회</li> <li>4. 전문기구: 감사원, 문화자치위원회, 소통국제화위원회, 학생·소수자인권위원회</li> <li>5. 특별기구</li> </ol>
<p>제9조(겸직 금지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동시</li> </ol>	<p>제9조(겸직 금지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동시</li> </ol>

<p>에 2개 이상 가질 수 없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총학생회장단</li> <li>2.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회 각 국서의 국장</li> <li>3. 각 상설위원회위원장단</li> <li>4. 각 학부·학과학생회장(단)</li> <li>5. 새내기학생회장단</li> <li>6. 동아리연합회장단</li> </ol> <p>2. 제1항 각 호의 직을 동시에 2개 이상 갖게 되었을 때에는 마지막에 갖게 된 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에서는 <u>해임</u>된 것으로 본다</p>	<p>에 2개 이상 가질 수 없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총학생회장단</li> <li>2.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회 각 국서의 국장</li> <li>3. 각 상설위원회위원장단</li> <li>4. 각 학부·학과학생회장(단)</li> <li>5. 새내기학생회장단</li> <li>6. 동아리연합회장단</li> </ol> <p>2. 제1항 각 호의 직을 동시에 2개 이상 갖게 되었을 때에는 마지막에 갖게 된 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에서는 <u>사퇴</u>한 것으로 본다</p>
<p>제10조(기록물 생산·수집·보존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정확과 신속을 기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본회의 사무처리와 대표자의 행위는 문서로 기록하여 <u>보존</u>해야 한다.</li> <li>2. 본회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적극 <u>노력</u>해야 한다.</li> <li>3. 기록물의 생산·수집 이후에는 이를 임의로 수정·훼손·폐기할 수 없다.</li> <li>4. 그 밖에 기록물 생산·수집·보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「<u>사무처리세칙</u>」으로 정한다.</li> </ol>	<p>제10조(기록물 생산·수집·보존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정확과 신속을 기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본회의 사무처리와 대표자의 행위는 문서로 기록하여 <u>보존</u>하여야 한다.</li> <li>2. 본회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적극 <u>노력</u>하여야 한다.</li> <li>3. 기록물의 생산·수집 이후에는 이를 임의로 수정·훼손·폐기할 수 없다.</li> <li>4. 그 밖에 기록물 생산·수집·보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<u>세칙</u>으로 정한다.</li> </ol>
<p>제11조(정보공개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본회</u> 산하기구 및 기구의 장은 본회가 생산·수집한 기록물이 본회 회원에게 원활히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</li> <li>2. 본회의 회원과 학술적 목적과 공익을 위해 본회의 기록물을 활용하려는 자는 본회의 모든 기록물에 대한 접근권이 있으며 기록물 관리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로 기록물을 열람·활용할 수 있다.</li> <li>3. <u>본회</u> 산하기구는 본회의 회원과 학술적</li> </ol>	<p>제11조(정보공개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본회의</u> 산하기구 및 기구의 장은 본회가 생산·수집한 기록물이 <u>본회의</u> 회원에게 원활히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</li> <li>2. 본회의 회원과 학술적 목적과 공익을 위해 본회의 기록물을 활용하려는 자는 본회의 모든 기록물에 대한 접근권이 있으며 기록물 관리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로 기록물을 열람·활용할 수 있다.</li> <li>3. <u>본회의</u> 산하기구는 본회의 회원과 학술적</li> </ol>

<p>목적과 공익을 위해 본회의 기록물을 활용하려는 자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. <u>단,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일부만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본회의 회원이 아닌 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</u></li> <li>2. <u>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될 때</u></li> <li>3. <u>계약 내용 등이 사전에 공개되었을 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 운영상의 피해가 우려될 때</u></li> <li>4. <u>그 밖에 정보공개청구 절차 등 정보공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「사무처리세칙」으로 정한다.</u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&lt;신 설&gt;</u></li> <li>2. <u>&lt;신 설&gt;</u></li> <li>3. <u>&lt;신 설&gt;</u></li> <li>4. <u>&lt;신 설&gt;</u></li> </ol> </li> <li>5. <u>&lt;신 설&gt;</u></li> </ol>	<p>적 목적과 공익을 위해 본회의 기록물을 활용하려는 자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. <u>&lt;단서 삭제&gt;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&lt;삭 제&gt;</u></li> <li>2. <u>&lt;삭 제&gt;</u></li> <li>3. <u>&lt;삭 제&gt;</u></li> <li>4. <u>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본회 산하기구는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일부만 공개할 수 있다.</u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본회의 회원이 아닌 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</u></li> <li>2. <u>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될 때</u></li> <li>3. <u>계약 내용 등이 사전에 공개되었을 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 운영상의 피해가 우려될 때</u></li> <li>4. <u>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때. 단,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의 종료 이후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.</u></li> </ol> </li> <li>5. <u>그 밖에 정보공개청구 절차 등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</u></li> </ol>
<p>제14조(위계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본회의 의결기구인 <u>학생총회</u>, 전체학생대표자회의, 중앙운영위원회 순으로 권한이 있다.</li> <li>2.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은 하위 기구의 의사결정에 우선한다.</li> <li>3. 하위 의결기구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해당 의결기구보다 <u>상위</u> 의결기</li> </ol>	<p>제14조(위계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본회의 의결기구인 <u>학생총회 및 학생총투표</u>, 전체학생대표자회의, 중앙운영위원회 순으로 권한이 있다.</li> <li>2.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은 하위 기구의 의사결정에 우선한다.</li> <li>3. 하위 의결기구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해당 의결기구보다 <u>상위</u> 의결기</li> </ol>

<p>구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.</p>	<p>구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.</p>
<p>제15조(의장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본회 의결기구의 의장은 <u>총학생회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</u></li> <li>2.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.</li> <li>3.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게 회의를 <u>진행해야 한다.</u></li> </ol>	<p>제15조(의장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본회 의결기구의 의장은 <u>회칙·세칙·규칙에 다르게 정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총학생회장으로 한다.</u></li> <li>2.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.</li> <li>3.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게 회의를 <u>진행하여야 한다.</u></li> </ol>
<p>제16조(세칙)</p> <p><u>의결기구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「의결기구운영세칙」에 따른다.</u></p>	<p>제16조(세칙)</p> <p><u>그 밖에 의결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</u></p>
<p>제21조(권한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전체학생총회는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.</li> <li>2. 비상학생총회는 학생사회의 긴급한 결정을 요하는 중대한 사안을 의결한다.</li> <li>3. <u>학생총회는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을 의결할 수 없다.</u></li> </ol>	<p>제21조(권한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전체학생총회는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.</li> <li>2. 비상학생총회는 학생사회의 긴급한 결정을 요하는 중대한 사안을 의결한다.</li> <li>3. <u>&lt;삭 제&gt;</u></li> </ol>
<p>제23조(소집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전체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<u>경우</u> 의장이 소집한다.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석 대의원 이상의 찬성 의결에 따른 소집요구</u></li> <li>2. <u>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</u></li> <li>3. <u>본회 회원 1/1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</u></li> </ol> </li> <li>2. <u>비상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. 단, 소집이 요건을 위반하여 이뤄지는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로 소집 결정을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.</u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중앙운영위원회 재석 위원 2/3 이상의 찬성 의결에 따른 소집요구</u></li> <li>2. <u>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소집요구</u></li> </ol> </li> </ol>	<p>제23조(소집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전체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<u>때에</u> 의장이 소집한다.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</u></li> <li>2. <u>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</u></li> <li>3. <u>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</u></li> </ol> </li> <li>2. <u>제1항제1호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</li> </ol>

<p>3. <u>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1/3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</u></p> <p>4. <u>본회 회원 1/2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</u></p> <p>3. <u>의장은 전체학생총회의 경우 개회 10일 이전, 비상학생총회의 경우 개회 1일 이전에 이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.</u></p> <p>4. 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5. 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6. 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3. <u>의장은 전체학생총회 개회 10일 전에 학생총회의 소집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4. <u>비상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. 단, 소집이 요건을 위반하여 이뤄지는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로 소집 결정을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중앙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</u></li> <li>2. <u>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</u></li> <li>3. <u>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</u></li> <li>4. <u>본회 회원 2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</u></li> </ol> <p>5. <u>제2항제1호는 재적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한 중앙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, 제2항제2호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</p> <p>6. <u>의장은 비상학생총회 개회 1일 전에 학생총회의 소집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.</u></p>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제23조의2(안건상정)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전체학생총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.</u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</u></li> <li>2. <u>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</u></li> <li>3. <u>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</u></li> </ol> </li> </ol>
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. <u>제1항제1호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</li> <li>3. <u>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비상학생총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.</u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중앙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</u></li> <li>2. <u>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</u></li> <li>3. <u>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</u></li> <li>4. <u>본회 회원 2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</u></li> </ol> </li> <li>4. <u>제2항제1호는 재적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한 중앙운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, 제2항제2호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</li> </ol>
<p>제24조(의사·의결정족수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전체학생총회는 본회 회원 <u>1/3</u>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본회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li> <li>2. 비상학생총회는 본회 회원 <u>1/10</u>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본회 회원 <u>1/8</u>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li> </ol>	<p>제24조(의사·의결정족수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전체학생총회는 본회 회원 <u>3분의 1</u>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본회 회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li> <li>2. 비상학생총회는 본회 회원 <u>10분의 1</u>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본회 회원 <u>8분의 1</u> 이상의 재석과 재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li> </ol>
<p>제25조(결과공고)</p> <p>학생총회의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<u>대중</u>에게 공고해야 한다.</p>	<p>제25조(결과공고)</p> <p>학생총회의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<u>본회 회원</u>에게 공고하여야 한다.</p>
<p>제26조(지위)</p> <p><u>학생총투표는 학생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의결기구이며, 이를 통한 의결사항은 전체 학생총회의 의결사항과 같은 효력을 가진</u></p>	<p>제26조(지위)</p> <p><u>학생총투표는 학생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본회 최고의 의사결정투표이다. 학생총투표의 의결은 학생총회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.</u></p>

<p>다.</p>	
<p>제27조(투표권)  <u>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은 학생총투표에서 투표권을 갖는다.</u></p>	<p>제27조(투표권)  <u>본회의 회원은 학생총투표에서 투표권을 갖는다.</u></p>
<p>제28조(권한)  <u>학생총투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시행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석 대의원 2/3 이상의 찬성 의결에 따른 시행요구</u></li> <li>2. <u>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</u></li> <li>3. <u>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/1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</u></li> <li>4. <u>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의 탄핵안 발의</u></li> <li>5. <u>그 밖의 본회의 중대한 사안의 경우</u></li> </ol>	<p>제28조(형식)  <u>학생총투표는 본회 회원의 투표의 형식으로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&lt;삭 제&gt;</li> <li>2. &lt;삭 제&gt;</li> <li>3. &lt;삭 제&gt;</li> <li>4. &lt;삭 제&gt;</li> <li>5. &lt;삭 제&gt;</li> </ol>
<p>제29조(형식)  <u>학생총투표는 본회 회원의 투표의 형식으로 한다.</u></p>	<p>제29조(권한)  <u>학생총투표는 학생총회와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.</u></p>
<p>제30조(시행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학생총투표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시행결정에 따라 학생총회 의장이 시행한다. 단, 제28조제4호의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 중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.</u></li> </ol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&lt;신 설&gt;</li> <li>2. &lt;신 설&gt;</li> <li>3. &lt;신 설&gt;</li> <li>4. &lt;신 설&gt;</li> <li>5. &lt;신 설&gt;</li> </ol>	<p>제30조(시행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학생총투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 학생총회 의장이 시행한다. 단,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제41조제4항에 따라 중앙운영위원 중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.</u></li> </ol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에 따른 시행요구가 있을 때</u></li> <li>2. <u>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가 있을 때</u></li> <li>3. <u>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가 있을 때</u></li> <li>4. <u>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라 발의된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이 학생총투표로 부의되었을 때</u></li> </ol>

<p>2. <u>학생총회 의장은 학생총투표의 시행을 시행 7일 이전에 이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.</u></p> <p>3. 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5. <u>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이 발의되었을 때</u></p> <p>2. <u>제1항제1호의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</p> <p>3. <u>의장은 시행 7일 전에 학생총투표의 시행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.</u></p>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제30조의2(안건상정)</u>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은 학생총투표에 안건을 상정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에 따른 시행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</li> <li>2.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</li> <li>3.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</li> <li>4. 전학대회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라 발의된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이 학생총투표로 부의된 경우</li> <li>5.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</li> </ol>
<p><u>제31조(성립·의결·요건)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학생총투표는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li> <li>2.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투표율의 계산은 명부상 총 투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. 단, 부정한 목적으로 명부를 부실하게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li> </ol>	<p><u>제31조(성립·의결 요건)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학생총투표는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li> <li>2.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투표율의 계산은 명부상 총 투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. <u>&lt;단서 삭제&gt;</u></li> </ol>
<p><u>제32조(결과공고)</u></p>	<p><u>제32조(결과공고)</u></p>



<p>학생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<u>개표완료시부터</u> 24시간 이내에 <u>중앙투표관리위원회</u>가 투표율과 결과를 공고한다.</p>	<p>학생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<u>개표완료 이후</u> 24시간 이내에 <u>학생총회 의장</u>이 투표율과 결과를 공고한다.</p>
<p>제33조(정책투표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정책투표는 본회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정책 결정·집행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다.</li> <li>2. 정책투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<u>시행 결정</u>에 따라 학생총회 의장이 시행한다.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</li> <li>2. 전학대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</li> <li>3.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<u>1/20</u>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</li> </ol> </li> <li>3. 정책투표 시행이 결정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지체 없이 정책투표 시행일을 <u>결정</u>한다.</li> <li>4. 정책투표는 <u>제29조</u>에 따른 투표권자 <u>1/8</u> 이상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li> <li>5. 정책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<u>개표완료시부터</u> 24시간 이내에 학생총회 의장이 투표율과 결과를 공고한다.</li> </ol>	<p>제33조(정책투표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정책투표는 본회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정책 결정·집행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다.</li> <li>2. 정책투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<u>시행일 의결</u>에 따라 학생총회 의장이 시행한다.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</li> <li>2. 전학대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</li> <li>3.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<u>20분의 1</u>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</li> </ol> </li> <li>3. 정책투표 시행이 결정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지체 없이 정책투표 시행일을 <u>의결</u>한다.</li> <li>4. 정책투표는 <u>제27조</u>에 따른 투표권자 <u>8분의 1</u> 이상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li> <li>5. 정책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<u>개표완료 이후</u> 24시간 이내에 학생총회 의장이 투표율과 결과를 공고한다.</li> </ol>
<p>제34조(지위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전체학생대표자회의(이하 <u>전학대회</u>)는 학생총회의 권한을 위임 받은 학생총회 아래 최고의결기구이다.</li> <li>2. 전학대회의 의결은 학생총회의 <u>의결과 동등한</u> 효력을 가진다.</li> </ol>	<p>제34조(지위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전체학생대표자회의(이하 "<u>전학대회</u>"라 한다)는 학생총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학생총회 아래 최고의결기구이다.</li> <li>2. 전학대회의 의결은 학생총회의 <u>의결에 준하는</u> 효력을 가진다.</li> </ol>
<p>&lt;신 설&gt;</p>	<p>제34조의2(구성)</p> <p>전학대회는 제35조에서 정한 전학대회 대의원으로 구성된다.</p>
<p>제35조(대의원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<u>전학대회의 대의원</u>이 된다.</li> </ol>	<p>제35조(대의원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<u>전학대회 대의원(이하 "대의원"이라 한다)</u>이 된다.</li> </ol>
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총학생회장단</li> <li>2. 동아리연합회장단</li> <li>3. <u>각 학부·학과학생회장 또는 부회장이 존재하는 경우 회장단 중 1인</u></li> <li>4. 새내기학생회장단</li> <li>5. 각 자치기구 소속 인원 비례 대의원</li> </ol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. <u>대의원 임기는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대의원 임기시작 전까지로 하며, 임기만료 또는 탄핵 또는 사퇴에 의하지 않고는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. 단, 새내기학생회는 예외로 두며 자치규칙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.</u></li> <li>3. <u>전학대회의 대의원은 소속 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소속 회원의 합의를 통해 선출된 대표에 한한다. 단, 소속 기구의 자치규칙이 없거나 자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보통, 평등, 직접, 비밀선거로 선출된 대표에 한한다.</u></li> <li>4. <u>중앙집행위원회는 전학대회 대의원 명부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며 본회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</u></li> </ol> <p>5. <u>&lt;신 설&gt;</u>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총학생회장단</li> <li>2. 동아리연합회장단</li> <li>3. <u>각 학부·학과학생회장</u></li> <li>4. 새내기학생회장단</li> <li>5. 각 자치기구 소속 인원 비례 대의원 :</li> </ol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. <u>대의원 임기는 전년도 1분기 초 정기 전학대회 폐회 후부터 당해 연도 1분기 초 전학대회 폐회 이전까지로 하며, 그 밖에 대의원 임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 대의원은 임기만료·탄핵·사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.</u></li> <li>3. <u>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내기학생회 소속 대의원 임기는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.</u></li> <li>4. <u>전학대회의 대의원은 소속 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소속 회원의 합의를 통해 선출된 대표에 한한다. 단, 소속 기구의 자치규칙이 없거나 자치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 보통·평등·직접·비밀선거로 선출된 대표에 한한다.</u></li> <li>5. <u>중앙집행위원회는 전학대회 대의원 명부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며 본회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.</u></li> </ol>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제35조의2(대의원 정수)</u>  <u>대의원 정수는 50인으로 하되, 비례 대의원석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</u></p>
<p>제36조(대의원의 의무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대의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</li> <li>2. 대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구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기구를 대표하는 의사를 <u>표명</u>해야 한다.</li> </ol>	<p>제36조(대의원의 의무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대의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</li> <li>2. 대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구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기구를 대표하는 의사를 <u>표명</u>하여야 한다.</li> </ol>

<p>3. 대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회의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.</p>	<p>3. 대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.</p>
<p>&lt;신설&gt;</p>	<p>제36조의2(권한)  <u>전학대회는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의결한다.</u></p>
<p>제37조(의장)  <u>전학대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,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.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, 총학생회장단의 탄핵 안건이 상정된 경우 중앙운영위원 중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.</u></p>	<p>제37조(의장)  1. <u>전학대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,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.</u>  2. <u>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총학생회장단의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에 중앙운영위원 중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.</u></p>
<p>제38조(소집)  1. 전학대회 정기회의는 <u>매 학기 초 및 해당 연도 말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</u>  2. 전학대회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의장이 14일 내에 소집한다.  1. <u>중앙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</u>  2. <u>중앙운영위원 1/3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</u>  3. <u>전학대회 재적 대의원 1/5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</u>  4. <u>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/4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</u>  5. <u>학생총회의 안건위임</u>  6. <u>총학생회장단 탄핵안 발의</u>  7. <u>상설위원회위원장단 또는 전문기구장 해임안 발의</u>  8. <u>회칙개정안 또는 세칙·규칙 제정안 발의</u>  3. 의장은 <u>개회일 5일 이전에 회의를 대중</u></p>	<p>제38조(소집)  1. 전학대회 정기회의는 <u>제165조제2항에 따른 매 분기 초에 의장이 소집한다.</u>  2. 전학대회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의장이 14일 내에 소집한다.  1. <u>중앙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</u>  2. <u>중앙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</u>  3. <u>전학대회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</u>  4. <u>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4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</u>  5. <u>학생총회에서 안건을 위임했을 때</u>  6. <u>전학대회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이 발의되었을 때</u>  7. <u>상설위원회 위원장단 또는 전문기구장 해임안이 발의되었을 때</u>  8. <u>제185조에 따른 회칙 개정안 또는 제191조제3항에 따른 세칙·규칙 제정안 또는 폐지안이 발의되었을 때</u>  3. 의장은 <u>개회 5일 전에 전학대회의 소집</u></p>

<p>에게 공고해야 한다. 단, 임시회의의 경우, 중앙운영위원회 재석인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</p> <p>4. &lt;후략&gt;</p>	<p>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. 단, 임시회의의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 재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</p> <p>4. &lt;후략&gt;</p>
<p>제39조(업무)</p> <p><u>전학대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, 의결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중앙운영위원회가 발의한 안건</u></li> <li>2. <u>중앙운영위원 1/3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</u></li> <li>3. <u>전학대회 재적 대의원 1/5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</u></li> <li>4. <u>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/4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</u></li> <li>5. <u>학생총회에서 위임한 안건</u></li> <li>6. <u>그 밖에 전학대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·의결 안건</u></li> </ol>	<p>제39조(안건상정)</p> <p><u>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전학대회에 안건을 상정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중앙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</u></li> <li>2. <u>중앙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</u></li> <li>3. <u>전학대회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</u></li> <li>4. <u>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4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</u></li> <li>5. <u>학생총회에서 안건을 위임한 경우</u></li> <li>6. <u>전학대회 의장이 그 밖에 전학대회의 심의·의결을 요하는 안건을 발의한 경우</u></li> </ol>
<p>&lt;신설&gt;</p>	<p>제39조의2(안건의 상정 시기)</p> <p><u>안건의 상정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제3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의된 안건은 제38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집되는 전학대회에 상정한다. 단, 회칙·세칙·규칙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.</u></li> <li>2. <u>제39조제6호에 따라 발의된 안건은 안건발의 일자로부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소집공고가 되는 전학대회에 상정한다. 단, 회칙·세칙·규칙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.</u></li> </ol>
<p>제40조(학생총회·학생총투표에 관한 사항)</p> <p><u>전학대회는 학생총회 소집 및 학생총투표</u></p>	<p>제40조(학생총회·학생총투표에 관한 사항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전학대회는 학생총회 소집 및 학생총투</u></li> </ol>

<p><u>시행을 의결할 수 있으며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.</u></p>	<p><u>표 시행을 의결할 수 있다.</u> 2. <u>전학대회는 학생총회 및 학생총투표에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41조(총학생회장단 탄핵안에 관한 사항) 전학대회는 <u>발의된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하거나 학생총투표로 부의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41조(총학생회장단 탄핵안에 관한 사항) 전학대회는 <u>대의원 과반수의 연서로 발의된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을 심의·의결하거나 학생총투표로 부의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43조(산하기구 관련 사항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전학대회는 <u>상설위원회위원장단 및 전문기구장의 인준·해임안을 의결한다.</u></li> <li>2. 전학대회는 <u>상설위원회·전문기구·특별기구의 인준·징계·제명·합병안을 의결한다.</u></li> <li>3. 전학대회는 <u>감사보고서 및 번역감독보고서 결과에 따른 산하기구의 예산삭감안을 의결할 수 있다.</u></li> </ol>	<p>제43조(산하기구에 관한 사항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전학대회는 <u>상설위원회 위원장·상설위원회 부위원장·전문기구장의 인준·해임안을 심의·의결한다.</u></li> <li>2. 전학대회는 <u>상설위원회·전문기구·특별기구의 인준·징계·제명·합병안을 심의·의결한다.</u></li> <li>3. 전학대회는 <u>감사보고서 및 번역감독보고서 결과에 따른 산하기구의 예산삭감안을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</u></li> </ol>
<p>제44조(징계에 관한 사항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전학대회는 <u>회원, 중앙운영위원, 전학대회 대의원</u>이 <u>회칙·세칙·규칙을 위반할 때 징계할 수 있다.</u></li> <li>2. 회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, 제2호와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.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공개 경고와 사과문 게재 요구</li> <li>2. 피선거권의 박탈</li> <li>3. 선거권의 박탈</li> <li>4. 제4조제4항에 따른 본회 자치활동의 참여권 박탈</li> </ol> </li> <li>3. 중앙운영위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, 제2호와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.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전학대회에서의 경고와 사과 요구</li> <li>2. 중앙운영위원회 출석정지</li> <li>3. 중앙운영위원 자격정지</li> </ol> </li> <li>4. <u>전학대회 대의원</u>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, 제2호와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.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전학대회에서의 경고와 사과 요구</li> </ol> </li> </ol>	<p>제44조(징계에 관한 사항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전학대회는 <u>회원, 중앙운영위원, 대의원</u>이 <u>회칙·세칙·규칙을 위반할 때 징계할 수 있다.</u></li> <li>2. 회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, 제2호와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.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공개 경고와 사과문 게재 요구</li> <li>2. 피선거권의 박탈</li> <li>3. 선거권의 박탈</li> <li>4. 제4조제4항에 따른 본회 자치활동의 참여권 박탈</li> </ol> </li> <li>3. 중앙운영위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, 제2호와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.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전학대회에서의 경고와 사과 요구</li> <li>2. 중앙운영위원회 출석정지</li> <li>3. 중앙운영위원 자격정지</li> </ol> </li> <li>4. <u>대의원</u>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, 제2호와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.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전학대회에서의 경고와 사과 요구</li> </ol> </li> </ol>
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. 전학대회 출석정지</li> <li>3. 대의원 자격정지 (<u>중앙운영위원직을 겸하는 대의원의 경우 중앙운영위원 자격도 정지</u>)</li> <li>5. 총학생회장단에게는 제2항제4호와 제3항제2호 및 제3호,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징계를 할 수 없다.</li> <li>6.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조사위원회 혹은 관련 전문기구를 통해 징계 대상자 및 징계 사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, 징계 대상자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</li> <li>7. &lt;신 설&gt;</li> </ol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. 전학대회 출석정지</li> <li>3. 대의원 자격정지. 단, 해당 대의원이 <u>중앙운영위원직을 겸하는 경우 중앙운영위원 자격도 정지한다.</u></li> <li>5. 총학생회장단에게는 제2항제4호와 제3항제2호 및 제3호,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징계를 할 수 없다.</li> <li>6.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조사위원회 혹은 관련 전문기구를 통해 징계 대상자 및 징계 사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, 징계 대상자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</li> <li>7. <u>그 밖에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</u></li> </ol>
<p>제45조(재정·감사 관련 사항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전학대회는 <u>사전심의를 거친</u>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심의·의결한다.</li> <li>2. 전학대회는 <u>사전심의를 거친</u>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결산 및 사업보고를 심의·의결한다.</li> <li>3. 전학대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감사보고서를 <u>채택한다.</u></li> <li>4. 전학대회는 본회 <u>회계의</u> 분배 비율 및 학생회비의 <u>인상·인하</u>를 결정할 수 있다.</li> </ol>	<p>제45조(재정·감사에 관한 사항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전학대회는 <u>중앙운영위원회에서 사전심의하여 의결한</u>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심의·의결한다.</li> <li>2. 전학대회는 <u>중앙운영위원회에서 사전심의하여 의결한</u>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결산 및 사업보고를 심의·의결한다.</li> <li>3. 전학대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감사보고서를 심의·의결한다.</li> <li>4. 전학대회는 본회 <u>재정의</u> 분배 비율 및 학생회비의 <u>인상·인하</u>안을 심의·의결한다.</li> </ol>
<p>제47조(대외적 사항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전학대회는 학교 당국에 본회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.</li> <li>2. 전학대회는 본회 차원의 상설적 연대 가입·탈퇴를 심의·의결한다. 총학생회장단은 연대 단체 활동을 전학대회 정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전학대회는 활동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변경 및 취소를 의결할 수 있다.</li> <li>3. <u>회원 전체의 명의로</u> 소송을 진행할 필</li> </ol>	<p>제47조(대외적 사항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전학대회는 학교 당국에 본회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.</li> <li>2. 전학대회는 본회 차원의 상설적 연대 가입·탈퇴를 심의·의결한다. 총학생회장단은 연대 단체 활동을 전학대회 정기회의 및 <u>중앙운영위원회 정기회의</u>에 보고하여야 하며 전학대회는 활동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변경 및 취소를 의결할 수 있다.</li> </ol>

<p>요가 있는 문제가 발생할 때, 전학대회는 총학생회장단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소송권을 위임할 수 있다.</p>	<p>3. <u>본회의 명의로</u>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발생할 때, 전학대회는 총학생회장단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소송권을 위임하거나 소송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.</p>
<p>제48조(의사·의결정족수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전학대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<u>출석 대의원 과반 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</li> <li>2. 다음 각 호의 사항은 <u>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상설위원회위원장단 및 전문기구장 해임에 대한 사항</u></li> <li>2. <u>상설위원회·전문기구·특별기구의 인준·제명·징계·합병에 대한 사항</u></li> <li>3. <u>학생회비의 인상·인하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4. <u>회칙 개정 및 세칙·규칙의 제정·폐지, 원규 개정안 발의에 대한 사항</u></li> <li>5. <u>&lt;신 설&gt;</u></li> <li>6. <u>&lt;신 설&gt;</u></li> <li>7. <u>&lt;신 설&gt;</u></li> </ol> </li> <li>3. 다음 각 호의 사항은 <u>재적 대의원 2/3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전체학생총회 소집 및 학생총투표 시행에 대한 결정</u></li> <li>2. <u>총학생회장단 탄핵안에 대한 사항</u></li> <li>3. <u>&lt;신 설&gt;</u></li> </ol> </li> </ol>	<p>제48조(의사·의결정족수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전학대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<u>회칙·세칙·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</li> <li>2. 다음 각 호의 사항은 <u>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상설위원회 위원장·상설위원회 부위원장·전문기구장 해임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2. <u>상설위원회·전문기구·특별기구의 인준·제명·징계·합병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3. <u>학생회비의 인상·인하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4. <u>회칙 개정 및 세칙·규칙의 제정·폐지, 원규 개정안 발의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5. <u>전체학생총회 소집 및 학생총투표 시행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6. <u>제170조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7. <u>기금의 타 회계 전용에 관한 사항</u></li> </ol> </li> <li>3. 다음 각 호의 사항은 <u>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재석과 재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&lt;삭 제&gt;</u></li> <li>2. <u>총학생회장단 탄핵안에 대한 사항</u></li> <li>3. <u>제49조에 따라 서면의결을 실시하는 안건</u></li> </ol> </li> </ol>
<p>제49조(서면의결)</p> <p>제38조제4항의 긴급한 사안의 경우,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재적인원 2/3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있다.</p>	<p>제49조(서면의결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의장은 제38조제4항의 긴급한 사항에 대해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있다.</u></li> <li>2. <u>서면의결을 실시하는 사항은 재적 대의</u></li> </ol>

	원 3분의 2 이상의 재석과 재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50조(결과공고)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.	제50조(결과 공고)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본회 회 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
	제51조의2(구성) 중앙운영위원회는 제52조에서 정한 중앙운 영위원으로 구성된다.
제52조(중앙운영위원) 1.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운 영위원이 된다. 1. 총학생회장단 2. <u>각 자치기구회장 혹은 회장단 중 전학대회 대의원 당연직인 사람 1 인</u> 3. <신 설> 4. <신 설> 2. <u>중앙운영위원의 임기는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임기시작 전까지로 한다. 임기만료 또는 탄핵 또 는 사퇴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 하지 않는다. 단, 새내기학생회는 예외 로 두며 자치규칙에 따르는 것으로 한 다.</u> 3. <u>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 명부 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며 본회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.</u> 4. <신 설>	제52조(중앙운영위원) 1.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운 영위원이 된다. 1. 총학생회장단 2. <u>동아리연합회장</u> 3. <u>각 학부·학과학생회장</u> 4. <u>새내기학생회장</u> 2. <u>중앙운영위원 임기는 전년도 1분기 초 정기 전학대회 폐회 후부터 당해 연도 1분기 초 정기 전학대회 폐회 이전까지 로 하며,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 임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 다. 중앙운영위원회는 임기만료 또는 탄 핵 또는 사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직 을 상실하지 아니한다.</u> 3. <u>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내기학생회 소 속 중앙운영위원의 임기는 새내기학생 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.</u> 4. <u>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 명부 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며 본회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.</u>
제53조(중앙운영위원의 의무) 1. 중앙운영위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 다. 2. 중앙운영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구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 반에서 기구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해 야 한다.	제53조(중앙운영위원의 의무) 1. 중앙운영위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 다. 2. 중앙운영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구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 반에서 기구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하 여야 한다.



<p>3. 중앙운영위원회는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회의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.</p>	<p>3. 중앙운영위원회는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.</p>
<p>&lt;신 설&gt;</p>	<p>제53조의2(권한) 중앙운영위원회는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,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의결한다.</p>
<p>제54조(의장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,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.</li> <li>2.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, 총학생회장단의 탄핵 안건이 상정된 경우 중앙운영위원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.</li> </ol>	<p>제54조(의장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,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.</li> <li>2.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, 총학생회장단의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에 중앙운영위원 중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.</li> </ol>
<p>제55조(소집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중앙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매 달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</li> <li>2. 중앙운영위원회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.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의장의 소집요구</li> <li>2. 중앙운영위원 1/5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</li> <li>3.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/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</li> <li>4. 그 밖에 긴급한 의결을 요구하는 사안이 있을 시</li> <li>5. &lt;신 설&gt;</li> </ol> </li> <li>3. 제2항에 따른 소집이 필요한 경우, 의장은 7일 내에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.</li> </ol>	<p>제55조(소집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중앙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2주에 1회 의장이 소집한다.</li> <li>2. 중앙운영위원회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의장이 5일 내에 소집한다.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의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</li> <li>2. 중앙운영위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</li> <li>3.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8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</li> <li>4. 전학대회에서 안건을 위임했을 때</li> <li>5. 그 밖에 긴급한 의결을 요구하는 사안이 있을 때</li> </ol> </li> <li>3. 의장은 회의 24시간 전에 중앙운영위원회회의 소집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. 단, 제2항제5호의 경우에는 소집공고 기한을 24시간 전으로 함을 예외로 한다.</li> </ol>

<p>4. <u>의장은 회의 3일 이전에 회의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. 단, 제2항제4호의 경우 예외로 한다.</u></p>	<p>4. <u>&lt;삭 제&gt;</u></p>
<p><u>제56조(업무)</u>  <u>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, 의결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중앙운영위원이 발의한 안건</u></li> <li>2. <u>중앙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안건</u></li> <li>3. <u>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/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</u></li> <li>4. <u>전학대회에서 위임된 안건</u></li> <li>5. <u>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·의결 안건</u></li> <li>6. <u>&lt;신 설&gt;</u></li> </ol>	<p><u>제56조(안건상정)</u>  <u>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중앙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의장이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</u></li> <li>2. <u>중앙운영위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</u></li> <li>3. <u>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8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</u></li> <li>4. <u>전학대회에서 안건을 위임한 경우</u></li> <li>5. <u>제5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소집과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</u></li> <li>6. <u>중앙운영위원이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요하는 안건을 발의한 경우</u></li> </ol>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제56조의2(안건의 상정시기)</u>  <u>안건의 상정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의된 안건은 제5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집되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. 단, 회칙·세칙·규칙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.</u></li> <li>2. <u>제5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발의된 안건은 안건발의 일자로부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소집공고가 되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. 단, 회칙·세칙·규칙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경우, 이를 따른다.</u></li> </ol>

<p>제57조(의결기구에 관한 사항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중앙운영위원회는 전학대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<u>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.</u></li> <li>2. 중앙운영위원회는 학생총회와 전학대회의 <u>개회</u>, 학생총투표의 시행에 관한 <u>세부 문제를</u> 논의하고 결정한다.</li> <li>3. 중앙운영위원회는 정책투표의 실시 요구에 따라 정책투표의 <u>시행 및 시행일을</u> 의결한다.</li> </ol>	<p>제57조(의결기구에 관한 사항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중앙운영위원회는 전학대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<u>전학대회에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.</u></li> <li>2. 중앙운영위원회는 학생총회와 전학대회의 <u>소집</u>, 학생총투표의 시행에 관한 <u>세부 사항을</u> 논의하고 결정한다.</li> <li>3. 중앙운영위원회는 정책투표의 실시 요구에 따라 정책투표의 <u>시행일을</u> 의결한다.</li> </ol>
<p>제58조(집행기구에 관한 사항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회 각 국서와 국장 임명동의안을 의결한다.</li> <li>2.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를 포함한 <u>본회 산하기구</u>의 사업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이를 조정한다. 단,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의 신속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사후에 보고하고 심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.</li> <li>3. 중앙운영위원회는 <u>총학생회장단 및 집행기구</u>의 결정과 집행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.</li> </ol>	<p>제58조(집행기구에 관한 사항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 국서 체계 동의안과 중앙집행위원장 및 국장 임명 동의안을 의결한다.</li> <li>2. 중앙운영위원회는 <u>본회 산하기구</u>의 사업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이를 조정한다. 단,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의 신속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사후에 보고하고 심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.</li> <li>3. 중앙운영위원회는 <u>제67조에 따른 집행기구</u>의 결정과 집행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.</li> </ol>
<p>제59조(선거에 관한 사항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선거 일정을 결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.</li> <li>2. 중앙운영위원회는 총선거결과에 대하여 본회 회원이 이의를 제소할 경우 이를 <u>선거시행세칙</u>에 의거하여 심사하여 <u>당선을 취소</u>할 수 있다.</li> <li>3. 중앙운영위원회는 자치기구회장단 선거에 대하여 <u>해당 본회 회원</u>이 이의를 제소할 경우 이를 <u>학생회칙 및 자치규칙</u>에 의거하여 심사하여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.</li> <li>4. <u>전학대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을</u> 취소하는 취지의 의결을 할 수 없다.</li> </ol>	<p>제59조(선거에 관한 사항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선거 일정을 결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.</li> <li>2. 중앙운영위원회는 총선거결과에 대하여 본회 회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<u>세칙</u>에 의거해서 심사하여 <u>당선 취소를 의결</u>할 수 있다.</li> <li>3. 중앙운영위원회는 <u>자치기구</u> 선거에 대하여 <u>본회 회원</u>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이를 <u>회칙·세칙·규칙</u> 및 해당 자치기구 <u>자치규칙</u>에 의거해서 심사하여 당선 취소를 의결할 수 있다.</li> <li>4. <u>&lt;삭 제&gt;</u></li> </ol>

<p>5. <u>제3항에 규정된 사항은 서면의결 형태로 의결 불가능하다.</u></p>	<p>5. <u>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은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없다.</u></p>
<p>제59조의2(재정에 관한 사항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사전심의하여 의결한다.</li> <li>2.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결산 및 사업보고를 사전심의하여 의결한다</li> <li>3. <u>&lt;신 설&gt;</u></li> </ol>	<p>제59조의2(재정에 관한 사항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사전심의하여 의결한다.</li> <li>2.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결산 및 사업보고를 사전심의하여 의결한다.</li> <li>3. <u>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감사를 감사원에 요구할 수 있다.</u></li> </ol>
<p>제60조(회칙·세칙·규칙에 관한 사항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중앙운영위원회는 전학대회에 <u>회칙개정안과 세칙·규칙의 제정·폐지안을</u> 발의할 수 있다.</li> <li>2. 중앙운영위원회는 <u>세칙·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.</u></li> </ol>	<p>제60조(회칙·세칙·규칙에 관한 사항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중앙운영위원회는 전학대회에 <u>회칙 개정안과 세칙·규칙 제정·폐지안을</u> 발의할 수 있다.</li> <li>2. 중앙운영위원회는 <u>세칙·규칙 개정안을 심의·의결한다.</u></li> </ol>
<p>제62조(위원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중앙운영위원회는 특정 기간 동안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<u>직속 위원회</u>를 설치할 수 있다.</li> <li>2. 위원회의 종류는 <u>다음과 같다.</u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특임위원회: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<u>사안</u>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위원회</li> <li>2. 조사위원회: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을 구성원으로 하면서 징계 또는 본회와 관련한 <u>사안</u>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 검토를 진행하는 위원회</li> <li>3. 준비위원회: 본회 차원의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한 <u>사안</u>을 담당하는 기구의 설립을 준비하는 위원회</li> </ol> </li> <li>3. <u>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정기적인 보고의 의무를 가진다.</u></li> <li>4. <u>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가 그 목적을 달성해 더 이상 존속이 무용할 경우,</u></li> </ol>	<p>제62조(위원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<u>산하 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위원회"라 한다)</u>를 설치할 수 있다.</li> <li>2. 위원회의 종류는 <u>다음 각 호로 한다.</u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특임위원회: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<u>사항</u>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위원회</li> <li>2. 조사위원회: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을 구성원으로 하면서 징계 또는 본회와 관련한 <u>사항</u>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 검토를 진행하는 위원회</li> <li>3. 준비위원회: 본회 차원의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한 <u>사항</u>을 담당하는 기구의 설립을 준비하는 위원회</li> </ol> </li> <li>3. <u>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본회의 운영 사항을 보고하고, 예산안 및 결산을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li> <li>4. <u>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운영</u></li> </ol>

<p><u>중앙운영위원회의</u> 의결에 따라 해체한다.</p> <p>5. 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위원회에</u>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.</p> <p>5. <u>위원회가</u> 그 목적을 달성해 더 이상 존속이 무용할 경우에 <u>중앙운영위원회</u> 의결에 따라 해체할 수 있다.</p>
<p>제63조(의사·의결정족수)</p> <p><u>중앙운영위원회는 특별한 단서가 없는 사항에 대해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</p>	<p>제63조(의사·의결정족수)</p> <p>1. <u>중앙운영위원회는 재적 중앙운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회칙·세칙·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</p> <p>2. <u>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중앙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</p> <p>1. <u>세칙·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에 관한 사항</u></p> <p>2. <u>제169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. <u>제170조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. <u>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중앙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재석과 재석 중앙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</p> <p>1. <u>제49조에 따른 전학대회 서면의결 실시안</u></p> <p>2. <u>제64조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 서면의결을 실시하는 안건</u></p>
<p>제64조(서면의결)</p> <p><u>서면의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, 재적 위원 2/3 이상의 참석과 참석 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없다.</u></p> <p>1. <u>전학대회 심의를 필요로 하는 안건의 상정안</u></p> <p>2. <u>전학대회 서면의결 실시안</u></p>	<p>제64조(서면의결)</p> <p>1. <u>의장은 제55조제2항제4호의 긴급한 사항에 대해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있다. 단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없다.</u></p> <p>1. <u>전학대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의 발의안</u></p> <p>2. <u>전학대회 서면의결 실시안</u></p>

<p>3. <u>그 밖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사항</u></p>	<p>3. <u>그 밖에 회칙·세칙·규칙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사항</u></p> <p>2. <u>서면의결을 실시하는 사항은 재적 중앙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재석과 재석 중앙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</p>
<p>제65조(결과공고)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<u>대중에게</u> 공고해야 한다.</p>	<p>제65조(결과 공고)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<u>본회 회원에게</u> 공고하여야 한다.</p>
<p>제69조(임기)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<u>당선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총학생회장단 임기시작 전까지</u>로 한다. 단, 제153조제1항의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고 익년 3월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제86조의 비상대책위원회 임기 종료 직후부터 당선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 시점까지로 한다.</p>	<p>제69조(임기)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<u>전년도 1분기 초 정기 전학대회 폐회 후부터 당해 연도 1분기 초 전학대회 폐회 이전까지</u>로 한다. 단, 제153조제1항의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고 익년 3월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제86조의 비상대책위원회 임기 종료 직후부터 당선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 시점까지로 한다.</p>
<p>제83조(구성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중앙운영위원회는 제82조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지체 없이 해당 사항 및 비상대책위원 모집을 공고해야 한다.</li> <li>2. 모든 중앙운영위원은 공고 후 10일 내에 소속 기구에서 임명한 1인 이상을 비상대책위원으로 파견해야 한다. 단, 소속 인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학부·학과학생회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.</li> <li>3. 중앙운영위원회는 모집공고 후 10일 내에 모집한 본회 회원 및 소속 기구에서 파견한 위원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. 단, 11월 선거무산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는 <u>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</u>에서 구성한다.</li> </ol>	<p>제83조(구성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중앙운영위원회는 제82조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지체 없이 해당 사항 및 비상대책위원 모집을 공고해야 한다.</li> <li>2. 모든 중앙운영위원은 공고 후 10일 내에 소속 기구에서 임명한 1인 이상을 비상대책위원으로 파견해야 한다. 단, 소속 인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학부·학과학생회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.</li> <li>3. 중앙운영위원회는 모집공고 후 10일 내에 모집한 본회 회원 및 소속 기구에서 파견한 위원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. 단, 11월 선거무산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는 <u>1분기 초 정기 전학대회</u>에서 구성한다.</li> </ol>
<p>제166조(회계 분류) 본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<u>가을 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 및 연도말 정기 전학대회</u>에서 다음 반기의 각 회계에 대한 분배</p>	<p>제166조(회계 분류) 본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<u>3분기 초 정기 전학대회 및 1분기 초 정기 전학대회</u>에서 다음 반기의 각 회계에 대한 분배 비</p>

<p>비율을 결정한다. 만약, 해당 분배 비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전 분기의 분배 비율을 계속하여 적용한다. 단, 학생회비가 변동되었을 경우 직후 전학대회에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,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중앙회계: 총학생회의 일반 사업 및 집행기구, 동아리연합회, 전문기구, 특별기구 재정지원</li> <li>2. 기층기구회계: 학부·학과 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 재정지원</li> <li>3. 격려기금: 회칙에 따라 정해진 본회 각 기구 선출직 및 국장 활동비 지원</li> <li>4. 문화자치기금: 본회 회원의 문화 진흥을 위한 자치 사업 지원</li> </ol>	<p>율을 <u>심의·의결</u>한다. 만약, 해당 분배 비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전 분기의 분배 비율을 계속하여 적용한다. 단, 학생회비가 변동되었을 경우 직후 전학대회에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,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중앙회계: 총학생회의 일반 사업 및 집행기구, 동아리연합회, 전문기구, 특별기구 재정지원</li> <li>2. 기층기구회계: 학부·학과 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 재정지원</li> <li>3. 격려기금: 회칙에 따라 정해진 본회 각 기구 선출직 및 국장 활동비 지원</li> <li>4. 문화자치기금: 본회 회원의 문화 진흥을 위한 자치 사업 지원</li> </ol>
<p>제154조(선거권·피선거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본회의 정회원과 재학 중인 준회원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.</li> <li>2. 본회 정회원 중 선거권을 가진 회원 중 「<u>선거시행세칙</u>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사람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.</li> </ol>	<p>제154조(선거권·피선거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본회의 정회원과 재학 중인 준회원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.</li> <li>2. 본회 정회원 중 선거권을 가진 회원 중 <u>세칙</u>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사람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.</li> </ol>
<p>제156조(중앙선거관리위원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총학생회장단 선거 및 회칙과 「<u>선거시행세칙</u>」에 부합하는 진행을 위탁한 자치기구회장단 선거(이하 총선거)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.</li> <li>2.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거의 제반업무를 총괄, 관장하며,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갖는다.</li> <li>3.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5 또는 7 또는 9인의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하고 위원장단은 내부호선한다.</li> <li>4.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연도 총선거 및 자치기구 회장단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.</li> </ol>	<p>제156조(중앙선거관리위원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총학생회장단 선거 및 회칙과 <u>세칙</u>에 부합하는 진행을 위탁한 자치기구회장단 선거(이하 총선거)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.</li> <li>2.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거의 제반업무를 총괄, 관장하며,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갖는다.</li> <li>3.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5 또는 7 또는 9인의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하고 위원장단은 내부호선한다.</li> <li>4.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연도 총선거 및 자치기구 회장단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.</li> </ol>

<p>제159조(선거시행세칙) 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사항은 「<u>선거시행세칙</u>」으로 정한다.</p>	<p>제159조(세칙) 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사항은 <u>세칙</u>으로 정한다.</p>
<p>제164조(재정운용세칙)  그 밖에 재정에 관한 사항은 「<u>재정운용세칙</u>」으로 정한다.</p>	<p>제164조(세칙)  그 밖에 재정에 관한 사항은 <u>세칙</u>으로 정한다.</p>